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 · 핵심 확인사항

학교에서 50m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교내·교외 여부와 학교경계 거리, 굴착·구조물·해체 등 공사 조건을 구분하세요.

거리만 표시된 지도 캡처로 끝내지 말고 배치도·경계와 실제 작업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. 굴착 깊이·부지 단차·구조물 조건에 따른 영향거리와 해체 허가·신고 구분 등 세부 요건은 운영 기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 · 핵심 확인사항

학교에서 50m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교내·교외 여부와 학교경계 거리, 굴착·구조물·해체 등 공사 조건을 구분하세요.

거리만 표시된 지도 캡처로 끝내지 말고 배치도·경계와 실제 작업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. 굴착 깊이·부지 단차·구조물 조건에 따른 영향거리와 해체 허가·신고 구분 등 세부 요건은 운영 기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 · 핵심 확인사항

학교에서 50m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교내·교외 여부와 학교경계 거리, 굴착·구조물·해체 등 공사 조건을 구분하세요.

거리만 표시된 지도 캡처로 끝내지 말고 배치도·경계와 실제 작업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. 굴착 깊이·부지 단차·구조물 조건에 따른 영향거리와 해체 허가·신고 구분 등 세부 요건은 운영 기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 · 핵심 확인사항

학교에서 50m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. 교내·교외 여부와 학교경계 거리, 굴착·구조물·해체 등 공사 조건을 구분하세요.

거리만 표시된 지도 캡처로 끝내지 말고 배치도·경계와 실제 작업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. 굴착 깊이·부지 단차·구조물 조건에 따른 영향거리와 해체 허가·신고 구분 등 세부 요건은 운영 기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공식 근거 원문 · 발췌 범위: 교육시설법 제19조 전체
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30. ·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

제19조(안전성평가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(이하 “안전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(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,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)하려는 자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

3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

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 · 방법 ·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공식 원문 열기: 교육시설법 제19조 전체

https://law.go.kr/LSW/lsLinkCommonInfo.do?chrClsCd=010202&lsJoLnkSeq=1027031057

표시한 조문·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.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건설안전 실무만화

교육시설안전성평가

공식 근거 원문 · 발췌 범위: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전체
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30. ·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

제20조(안전성평가)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”이란 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말한다.

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”란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.

③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(이하 “안전성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

2.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

3.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

④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해당 안전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.

⑥ 법 제19조제2항에서 “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”란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, 건축계획서의 수정 · 보완 등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.

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자는 해당 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미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⑧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자는 해당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(이하 “안전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<신설 2025. 1. 31.>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 1. 31.>

공식 원문 열기: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전체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SideInfoP.do?docCls=jo&joBrNo=00&joNo=0020&lsiSeq=281439&urlMode=lsScJoRltInfoR

표시한 조문·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.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.